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487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14일

발 의 자 : 지광천 의원

찬 성 자 : 이주웅, 박찬원
장문혁, 심현정
이명순 의원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22년 3월 17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의원발의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외 1건,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6건, 총19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
-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2. 심사안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활동기간

○ 2022년 3월 17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성

○ 지광천 의원, 이주웅 의원, 박찬원 의원, 장문혁 의원, 심현정 의원, 이명순 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수	내 용	비고
2022. 3.17. (목)	제1차 조례 특위 (1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4.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12.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